

예 산 총 칙

2021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84,303,224	17,529,097
일반회계	552,325,230	16,569,757
특별회계	31,977,994	959,340
기타특별회계	31,977,994	959,340
상수도사업	2,578,626	77,359
하수도사업	5,169,585	155,088
수질개선	7,945,614	238,368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66,955	17,009
의료급여기금	694,522	20,836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3,573,056	107,192
공영개발사업	518,520	15,556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93,012	2,790
행복주택사업	4,838,104	145,14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945,472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- 2. 재해대책 및 복구비